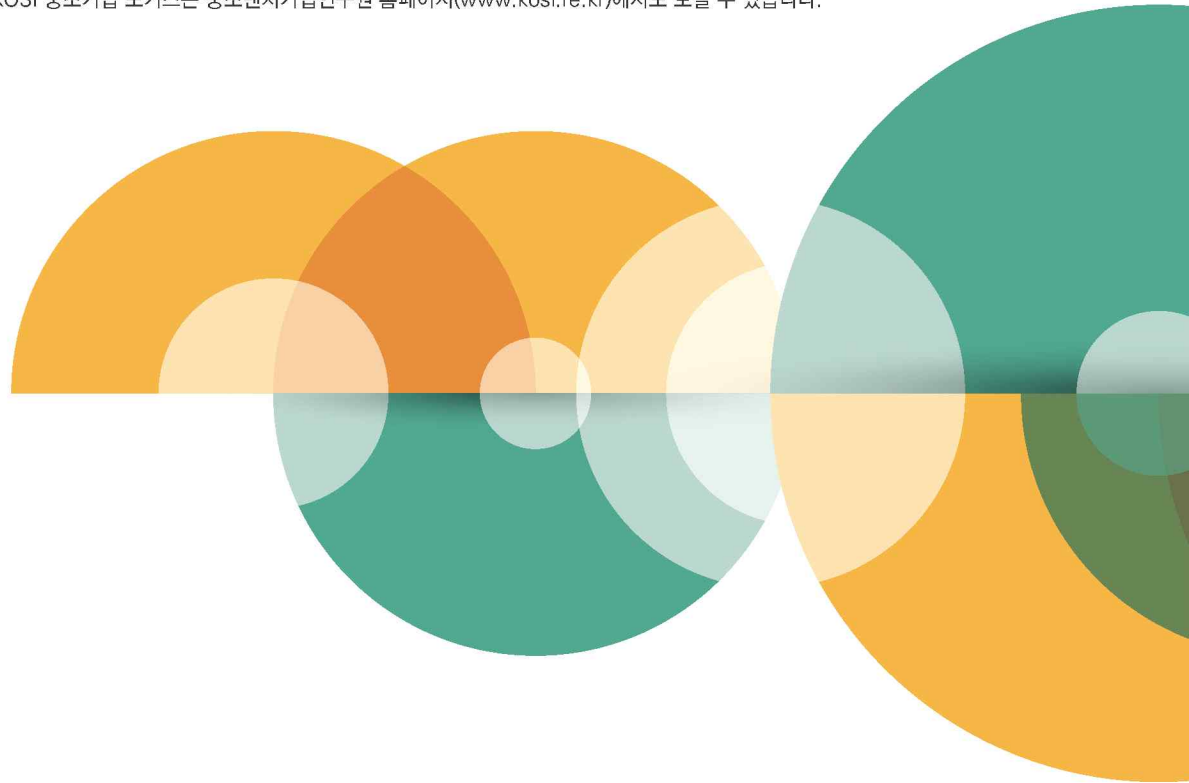


# KOSI 중소기업 포커스

## IPEF의 논의 동향과 對중소기업 시사점 : 무역 및 공급망 중심으로

책임작성 | 엄부영 연구위원(02-707-9840, byeom@kosi.re.kr)

※ KOSI 중소기업 포커스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os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 목 차

1. 서론
2. IPEF의 등장 배경과 특징
3. IPEF의 논의 동향과 이슈
4. IPEF의 對중소기업 시사점

## | 요약

- IPEF는 2022년 5월 23일 출범되었으며, 제1차 협상이 12월 9일 개시됨
  - IPEF는 미국 주도의 신 경제통상 협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주요 통상 이슈로 부각됨. 이에 규범 수립과 실효성 있는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해짐
  - 특히 Pillar1의 포용적 성장과 디지털 경제, Pillar2의 생산공급망 회복과 유연성 강화는 중소·스타트업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과도 직결되는 사안임
- IPEF는 지정학 시대의 산물로, 기존 통상협정과는 상이한 특징을 보유함
  - IPEF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기술 패러다임의 급진적 전환이 대두되는 등 통상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무역질서 확립 필요성이 높아지자 미국이 정치·경제적 고려 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시장접근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행정협정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요 통상 이슈 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관련 규범 수립과 협력을 강조함
- 중소기업 및 통상 관련 IPEF의 주요 논의 동향과 이슈는 다음과 같음
  - 디지털 경제(Pillar1 - Trade)
    - IPEF(안)는 디지털 무역 촉진, 인터넷 접근성 향상, 차별적 관행 개선, 디지털 인프라와 플랫폼 발전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디지털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신기술의 책임감 있는 개발·사용 촉진을 규정함

- 디지털 무역 조항이 요구하고 있는 디지털 개방 수준은 RCEP보다는 높으나 CPTPP 수준 또는 USMCA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예상됨
- 한편 해외 디지털 거래장벽 해소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높은 수요와 참여국들의 다양한 디지털화 수준을 고려한 협상 전략이 필요함
- 공급망(Pillar2 - Supply Chain)
  - IPEF(안)는 생산공급망의 유연성 강화와 공급망 불안 요소를 제거하며, 이를 위해 핵심 부문·품목 기준의 설정, 공급망 유연성을 위한 투자 촉진, 정보공유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공급망 물류 및 투명성 강화, 노동자 역할 향상을 규정함
  - IPEF 논의에서 거론되고 있는 ‘핵심 부문·품목’으로는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의약품, 방위, ICT, 에너지, 운송, 농업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의 높은 중간재 수입 규모와 산업 특성, 국내기업의 취약한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고려할 때, IPEF를 통해 한국의 생산공급망 역량 강화 전략이 필요함

## ■ IPEF의 對중소기업 시사점

-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의 이분법적 통상전략으로 경제적 실리 추구가 필요함
  - 전통산업과 핵심산업을 구분, 차별화된 전략으로 기존 생산망 공급을 유지하면서 첨단기술 부문의 경쟁력 제고와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 개방적인 디지털 무역 환경 구축에 초점을 맞추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디지털 무역장벽 완화 노력과 함께, 인도와 아세안국들의 Pillar1 참여를 독려
  - 공공데이터 공개, 데이터 현지화 등 민감 조항에 대해서는 데이터 주권, 중소·스타트업의 기술경쟁력과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
- 디지털 통상협상을 염두에 둔 국내정책 수립과 규제 개선이 필요함
  - 첨단산업 내 규제 등을 우선 개선하고, 국내 정책 마련 시 디지털 통상 조항을 병행 검토
- 중소기업 관점의 ‘핵심 부문·품목’ 정의와 이들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상 전략이 필요함
  - 중소기업 민감 품목이나 정책수요가 높은 품목들을 정의하여 IPEF ‘핵심 부문·품목’ 협상 시 반영

- IPEF를 시장·품목 다변화 및 협력거점 마련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IPEF 계기로 구축될 생산 공급망 협력 기제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수출입 시장 및 품목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참여국 간 협력 강화로 해외진출 거점을 마련
- 끝으로, IPEF 내 중소기업 협의체 또는 정책대화 설치가 필요함
  - IPEF가 규범보다 협력 위주이고 중소기업과 직결된 부분이 많은 만큼, 중소기업 이슈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동 협정의 실효성을 제고

## 1. 서론

### ■ 2022년 5월 23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가 정식으로 출범함

- IPEF 공동선언문에 기초하여 '22년 12월 14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협상(호주)이 개최되었고, 올해 3월 13~19일 제2차 협상(인나)이 개최될 예정임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피지

### ■ IPEF는 미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경제안보 차원의 신 경제통상 협정임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 견제와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지향함
- RCEP, CPTPP와 달리 디지털 전환, 공급망 위기, 기후 변화 등 최근 통상관련 주요 이슈들을 포괄하고 관련된 규범과 협력을 강조함

- IPEF는 참여국들의 시장규모가 가장 큰 다자간 통상협정으로, 기존 메가 FTA의 미가입국이자 생산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한 미국과 인도가 참여함

- 디지털 통상협상 미체결국인 인도와 아세안 국가들(싱가폴 제외)이 포함됨

-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입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요국들이 참여함\*

\* 2021년 기준 한국의 對IPEF 참여국들의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644,401백만불, 615,095백만불로, 이중 중간재는 각각 38%, 41%를 차지함<sup>1)</sup>

### ■ IPEF의 참여국으로서, 우리나라 역시 신경제통상 관련 규범 수립과 실효성 있는 협력관계 구축·활용이 중요함

- 디지털 경제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규제완화와 기술협력, 미-중 분쟁 가운데 안정적인 핵심자원과 공급망 확보가 중요함
- 특히, Pillar1의 포용적 성장과 디지털 경제, Pillar2의 생산 공급망 회복과 유연성 강화는 중소·스타트업 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과 직결됨

### ■ 비록 IPEF의 구체적 문안이 확정·공개되지 않았으나,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 관점에서 IPEF의 통상 관련 주요 이슈들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1) 한국지역학회(2022) 인용, 한국무역협회 데이터로 저자 계산

## 2. IPEF의 등장 배경과 특징

### ■ IPEF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가속화된 기술 패러다임 전환을 배경으로 등장함

-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과 핵심 자원의 공급망이 중요해지면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었고, 세계화 시대에서 지정학적 시대로 통상환경이 전환됨
  - 미-중 갈등과 러-우 전쟁은 비경제-경제의 결합, 블록화, 신뢰가치사슬(TVC: Trust Value Chain)을 촉진하였고, 경영에서도 기술전략이 입지전략 보다 중시됨<sup>2)</sup>

### ■ 이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치·경제적 고려가 추진동력이 됨

-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S 보고서에 따르면,<sup>3)</sup> 미국은 동 지역을 안보와 번영의 핵심지로 설정하고 중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 동맹국간 공동 노력을 강조함
  - 아울러 자유와 개방, 연결성, 번영, 안보 및 회복력의 5개 목표를 제시하였음

### ■ IPEF는 총 4개 Pillar로 구성, 기존 통상협정과는 상이한 특징을 보유함

-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 및 공정경제 Pillar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Pillar 1) 무역원활화, 디지털 경제, 농업, 환경, 노동 등 규범 및 협력
  - (Pillar 2) 공급망 위기 대응과 핵심부문의 인프라 구축 및 투자
  - (Pillar 3) 청정에너지 전환 관련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 (Pillar 4) 세제, 뇌물방지·정부조달 등 역량강화를 통한 투명성 강화
- IPEF는 기존 양자간 또는 다자간 통상협정과 다른 측면이 있음
  - 시장접근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행정협정의 형태로, 신속한 발효가 가능함
  - 최근 통상관련 주요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관련 규범과 협력을 강조함
  - 참여국들은 Pillar에 선택적으로 참여가 가능함
  - 따라서 무역자유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고, 통상협정과 같은 강제성은 약할 수 있음

2) 지만수(2022)

3) 한국지역학회(2022)에서 재인용

### 3. IPEF의 논의 동향과 이슈

#### 가. 디지털 경제

- IPEF의 Pillar1은 총 9개 분야(노동, 환경, 디지털 경제, 농업, 투명성, 경쟁정책, 무역 촉진, 포용성, 경제협력)를 포괄하며, 그중 핵심적 사안은 디지털 경제임<sup>4)</sup>
  -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는 포용적인 디지털 무역 발전, 디지털 경제에 대한 신뢰 구축, 온라인 정보 및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접근성 향상, 차별적 관행 개선, 유연하고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 및 플랫폼 발전을 추구함
    - 이를 위해 ① 신뢰할 수 있는 국경 간 데이터 흐름, ② 디지털 경제의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 ③ 신기술의 책임감 있는 개발·사용을 촉진·지원
    - 디지털 기술의 특성과 공공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유연성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과 경제·기업의 모범사례 공유를 규정
- Pillar1의 디지털 무역 조항은 최근 체결된 협정문들의 기본 조항을 중심으로 논의, 협상 수위가 정해질 전망이다
  - 디지털 무역은 FTA의 전자상거래 챕터나 단독 챕터로 규정, 또는 모듈식의 디지털협정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RCEP에서 USMCA까지 개방화 수준도 다양함
    - CPTPP는 소스 코드 공개 요구 금지를 도입 USMCA와 한-싱 DPA는 알고리즘까지 소스 코드에 포함시켰고, 후자는 공공데이터 접근을 노력 조항으로 포함
    - USMCA는 국경 간 정보 이동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 데이터 현지화 금지에 예외 조항을 미 포함하바 가장 강화된 디지털 무역협정이라 할 수 있음
  - 참여국들의 디지털 통성협상 경험과 자유화 수준 등을 고려할 때, IPEF의 디지털 무역은 RCEP 보다는 높으나 CPTPP 수준 또는 USMCA 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체결될 가능성이 높음

4) USTR(2022.9). Ministerial Statement for Pillar I of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표 1〉 협정별 디지털 무역 조항 및 특징 비교

| 구분               | RCEP            | CPTPP           | USMCA           | DEPA         | 한-싱 DPA        |
|------------------|-----------------|-----------------|-----------------|--------------|----------------|
| 특징               | 전자상거래<br>챕터에 포함 | 전자상거래<br>챕터에 포함 | 디지털<br>무역 챕터    | 모듈식 구성       | 디지털<br>무역 챕터   |
| 주<br>요<br>조<br>항 | 국경 간 정보 이동      | ○               | ○<br>(네거티브 방식)  | ○            | ○<br>(네거티브 방식) |
|                  | 데이터 현지화 금지      | ○               | ○<br>(예외조항 미포함) | ○            | ○              |
|                  | 소스 코드 공개 요구 금지  | ×               | ○               | ×            | ○<br>(알고리즘 추가) |
|                  | 개인정보 보호         | ○               | ○               | ○            | ○              |
|                  | 공공데이터 접근        | ×               | ×               | ○<br>(노력 조항) | ○<br>(노력 조항)   |

출처: 이종용 외(2019) 인용, 통상협정문 내용을 저자 정리

■ 해외 디지털 거래장벽 해소에 대한 중소기업업계의 요구는 높은 편임

-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이규엽 외 조사(2021)<sup>5)</sup>에 따르면, 데이터 규제, 디지털 상품 거래, 전자상거래 순으로 장벽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소규모 기업들이 매우 시급하다고 답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데이터 거래장벽에 취약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중규모 기업들은 특정 기술 사용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 민감함

〈표 2〉 디지털 무역장벽 해결의 시급성

| 구분           | 무역장벽                | 내수기업 | 전자상거래 기업 |
|--------------|---------------------|------|----------|
| 전자상거래        | 전자인증의 복잡성           |      | ○1)      |
|              | 전자결제 시스템 부족         |      | ○        |
|              | 불필요한 통관서류 요구        |      |          |
| 디지털 상품<br>거래 | 상품 반품 시 절차의 복잡성     |      |          |
|              | 소액상품 및 전자적 전송물 과세   |      |          |
|              | 디지털 콘텐츠와 상품 간 차별대우  |      |          |
|              | 자국 업체와의 차별대우        |      | ○        |
| 데이터 규제       | 특정 기술 사용 요구         | ●    | ●2)      |
|              |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제한      |      | ○        |
|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엄격한 규정   | ●    | ●        |
|              | 해당 국가 컴퓨팅 설비의 사용 요구 |      | ○        |
|              | 소스코드 공개 또는 수정 요구    |      | ○        |

주: 1) ○는 소규모 기업(고용자 수 25인 미만, 매출액 50억 미만)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경우

2) ●는 중규모 기업(고용자 수 25인 이상, 매출액 50억 이상)과 소규모 기업(○) 모두가 시급하다고 응답한 경우

출처: 이규엽 외(2022)에서 발췌하여 저자 정리

5) 총 1,02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업이 포함됨



- 동 결과는 기존 전자상거래 중심의 통상협상과 정책 우선순위를 디지털 제품 및 데이터 거래로 확대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함을 시사함

■ IPEF 참여국들의 디지털 무역 관련 규제 수준과 가입에 따른 예상효과는 매우 상이함

- 베트남과 인도의 데이터 현지화 및 국외이동 규제 수준이 가장 높고(조치 3단계), 인니와 말련(2단계)이 그 뒤를 이음(정해영, 2022)
  - 한편 전자상거래 비중도 베트남(0.00%)과 인도(0.01%)에서 가장 작고 인니(0.03%)와 말련(0.13%) 역시 작은바, 이들의 Pillar1 가입 시 디지털 무역장벽 완화로 인한 무역 촉진 효과가 기대됨

〈표 3〉 IPEF 참여국별 수출 규모 및 데이터 규제 현황

| 구분    | 수출('22.10)   |                | 데이터 규제 <sup>1)</sup> |               |              |
|-------|--------------|----------------|----------------------|---------------|--------------|
|       | 수출액<br>(백만원) | 전자상거래<br>비중(%) | 조치 분류<br>(단계)        | 데이터 현지화<br>요구 | 데이터 국외<br>이동 |
| 일본    | 25,893       | 0.77           | 11)                  | X             | △            |
| 베트남   | 51,563       | 0.00           | 33)                  | O             | X            |
| 싱가폴   | 17,381       | 0.11           | 1                    | X             | △            |
| 인도    | 15,998       | 0.01           | 3                    | O             | X            |
| 필리핀   | 10,788       | 0.06           | 04)                  | X             | O            |
| 말레이시아 | 9,846        | 0.13           | 22)                  | O             | △            |
| 인도네시아 | 8,697        | 0.03           | 2                    | O             | △            |
| 태국    | 7,264        | 0.03           | 1                    | X             | △            |
| 미국    | 91,659       | 0.30           | 1                    | X             | O            |

주: 1) 1단계: 데이터의 현지화를 요구하진 않으나, 안전조치에 따른 조건부 국외 이동은 허용

2) 2단계: 데이터를 현지에 저장해야 하나, 명확히 규정된 조건에 따라 국외 이동을 허용

3) 3단계: 데이터의 현지화를 요구하며, 국외이동을 위해서는 관련 당국으로부터 사전별 예외 승인이 필요

4) 0단계: 데이터의 현지화를 요구하거나 국외이동을 제한하진 않으나, 데이터 접근 보장 및 사후 법적 책임을 요구

출처: 정해영(2022)에서 발췌하여 저자 정리

■ 한편 국내 디지털 정책과 규제 완화 조치는 디지털 무역 관점에서 시각차가 존재함

- ‘디지털 뉴딜 정책(2020.7)’과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2020.11)’을 통해 디지털 산업과 비대면 서비스를 육성, 수출 지원체계도 개선해왔으나,
-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는 ‘개방’과 ‘데이터 주권’ 간 이견이 존재함
  - 그 대표적 예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도(CSAP: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로, 해외 기업에게 공공시장 진입장벽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낮은 경쟁력과 데이터 주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상충되고 있음<sup>6)</sup>

6) 매일경제(1010.09.05.), 매일경제(2021.12.28.)

## 나. 공급망

■ IPEF의 Pillar2는 생산공급망의 유연성 강화와 공급망 교란 방지를 위해 참여국들 간 협력을 지향,<sup>7)</sup>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논의 중임

- 핵심 부문 및 품목(Critical Sectors and Goods)의 정의 기준 설정
  - 국가안보, 국민의 건강·안전, 경제적 유연성에 중요한 부문 및 품목의 정의 기준 설정, 원자재-제조-공정 역량-물류-재고를 정의하는 과정 개발
- 핵심 부문 및 품목에 대한 유연성 및 투자 증대
  - 핵심 부문의 무역·투자 촉진, 물리적, 디지털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 촉진, 소스 다양화의 수단과 기관 발굴, 고급 제조기술과 현대화에 대한 투자
- 정보 공유 및 위기대응 체계 수립
  - 핵심 부문의 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효율적 이동을 위한 대응조치 포함, 공급망 교란 조정을 위한 정부 간 메커니즘 구축, 신뢰할 만한 데이터 보장과 기술 장려, 정보수집 및 위기 대응 기관 지정
- 공급망 물류 강화
  - 공급망 물류 관련 데이터 수집·활용, 물류 개선을 위한 투자 및 기술협력 촉진, 공급망 유연성 향상을 위한 공동 수단 개발, 병목현상 해결 방법 강구
- 노동자의 역할 향상
  - 핵심 부문에서 숙련 노동자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과 기회 개발·투자
- 공급망 투명성 향상
  - 리스크에 대한 가시성 제고, 핵심 부문 공급망의 투명성 제고 수단과 조치 개발, 민간 부문과의 리스크 경감 노력 경주

7) USTR(2022.9). Ministerial Statement for Pillar II of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 Pillar2가 강조하는 ‘핵심 부문 및 품목(Critical Sectors and Goods)’은 상세히 명시되어 있진 않으나,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이 거론되고 있음

- 이들 품목은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공급망 관리차원에서 제시한 4대 품목<sup>8)</sup>과도 일치함

\* 반도체(아시아 편중), 핵심광물(특정국가 편중), 의약품(중국·인도 편중), 배터리(원재료 가공, 배터리 팩의 높은 수입의존도)

- 아울러 핵심산업으로 지정된 방위, ICT, 에너지, 운송, 농업 등의 협상 가능성도 존재함

■ 중간재의 수입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공급망 관리가 특히 중요함

- 우리나라는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나 동시에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은바, 수출입의 약 40%를 담당하는 IPEF 참여국들은 중요한 교역 대상국임

- 다만 이들의 품목별 공급망 연계성은 낮은바, 향후 IPEF를 통한 수입국 확대가 필요함

- 한국지역학회(2022)에 따르면 원자재, 중간재 및 자본재 모두 수입 상위 20개 품목들이 평균 4개 IPEF 참여국과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중 미국과 일본은 전방 GVC 관점에서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은 후방 GVC 관점에서 수입 공급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표 4〉 IPEF 참여국별 우리나라 상위 20대 수입품목의 해당 품목 수(2021년 기준)

(단위: 개)

| 구분  | 미국 | 일본 | 싱가폴 | 베트남 | 말련 | 태국 | 필리핀 | 호주 | 인도 | 인니 | 뉴질랜드 |
|-----|----|----|-----|-----|----|----|-----|----|----|----|------|
| 원자재 | 14 | 7  | 2   | 5   | 3  | 9  | 5   | 14 | 4  | 7  | 3    |
| 중간재 | 18 | 13 | 6   | 7   | 14 | 7  | 7   | 4  | 3  | 5  | 1    |
| 자본재 | 20 | 15 | 10  | 9   | 8  | 4  | 3   | 3  | 2  | 1  | 0    |

출처: 한국지역학회(2002) 분석결과로 저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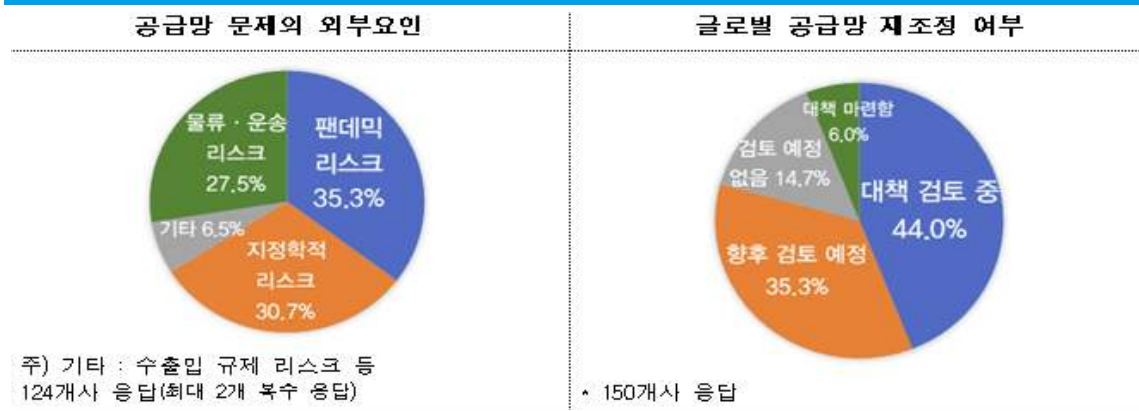
- 아울러 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포스트 차이나에 대비한 OFDI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8) 윤여준(2021)

■ 국내의 낮은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외적인 연계·협력이 중요함

- 전국경제인연합회(2022)<sup>9)</sup>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은 평균 58점으로 낮은 수준이며, 공급망 재조정 대책을 마련한 경우도 6%에 불과함

[그림 1] 글로벌 불안 요인과 재조정 전략 수립 여부



출처 : 전국경제인연합회(2022)

- 디지털화, ESG 대응성, 신속성, 분산성, 유연성 순으로 낮은 점수를 수급처 다변화 정보제공, 공급망 위기경보 시스템 강화, 공급망 민감 품목에 대한 지원체계 고도화, 국산화율 제고 지원,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확대 순으로 정책 수요가 제시
- 이들의 정책 수요는 공급망 관리 및 인프라 구축을 지향하는 IPEF의 취지와 일맥상통함
- 한편 중소 수출입기업은 민감품목과 거래처, 원자재 조달방식 등에서 대기업과 상이한 측면이 있어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
  - 특히 핵심 원부자재의 조달,\* 핵심품목의 국산화율 제고,\*\* 공급망 디지털화\*\*\* 등 중소 수출 기업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들이 IPEF의 위기대응 및 기술 협력과 연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경우 대부분의 원자재가 다국적 제약회사로부터 조달되나, 부득이한 경우 정부나 외교적 지원이 중소기업 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 반도체 산업의 경우, 중고 부품이나 리사이클링 부품·기술이 중소기업에 필요한 경우가 존재함
  - \*\*\* 일부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공급망 디지털화가 대기업-1차 협력사 간에 소수 진행되고 있으나 2차 및 3차 협력사까지는 확대가 어려운 상황임

9) 매출액 상위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함(150개사 응답)

## 4. IPEF의 對중소기업 시사점

-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의 이분법적 통상전략으로 경제적 실리 추구가 필요함
  - 한국의 IPEF 가입에 대한 중국의 보복 우려도 존재하나, 전통산업과 핵심 산업별로 실익을 추구할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전통산업의 경우, 생산 공급망의 다변화가 쉽지 않은 만큼 한-중 회담,<sup>10)</sup> 협·단체 간 실무 교류·협력 등을 지속하며 기존 틀 내에서 실익을 추구해야 함
    - 핵심산업의 경우에는 원자재와 관련 기술 확보에 주력하면서 수출통제, 보호주의 조치(예: IRA) 등에 협상 레버리지로 이용하는 전략이 필요함
- 개방적인 디지털 무역환경 구축에 초점을 맞추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사항 완화에 주안점을 두되,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인도 및 아세안 국가들의 Pillar1 참여를 독려하는 협상 전략(예: 기술지원 등)이 병행되어야 함
  - 한편 공공데이터 공개, 데이터 현지화 금지(예외 규정) 등 민감한 조항에 대해서는 데이터 주권을 강조하면서, 중소·스타트업의 기술경쟁력과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해야 할 것임
- 디지털 통상협상을 염두에 둔 국내정책 수립과 규제 개선이 필요함
  - 디지털 거래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첨단산업 내 규제, ICT 기반 중소·스타트업 기업들의 체감도가 높은 규제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향후 국내 정책 마련 시 디지털 통상 조항을 병행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중소기업 관점에서 핵심 부문·품목 정의가 선결되어야 하며, 이들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상 전략이 필요함
  - 중소기업 민감품목이나 핵심 부품 재고·재활용 부품(기술) 등 정책수요가 높은 품목들을 파악, 현장 재검증을 통해 IPEF ‘핵심 부문·품목’ 협상 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10) 아주경제(2022.09.30.)

‘한·중 공동번영포럼’ (한국무역협회, 중국국제교류협회(CAFIU), 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와 공동 주최)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경제, 저탄소 등 분야에서 한-중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함

■ IPEF를 시장·품목 다변화 및 협력 거점 마련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IPEF 계기로 구축될 생산 공급망 협력 기제\*를 활용하여 해외 틈새시장 개척과 현지 거점 마련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생산공급망 안정화와 유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투자 협력, 공급망 소스 다양화, 공급망 물류 강화 등

- 한 예로 자동차부품 산업의 경우 해외 AS 시장이 유망함에도 그간 적극적으로 개척하지 못하였는데, 향후 IPEF 참여국들의 시장 공략 및 다양한 AS 부품 개발과 네트워킹을 시도해볼 수 있음
- 특히 미래차 AS 시장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또는 수평계열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고, 중소기업 동반진출로 해외 현지시장 개척과 기술협력 도모가 가능함<sup>11)</sup>

■ IPEF 내 중소기업 협의체 또는 정책대화 설치가 필요함

- IPEF가 규범보다 협력 위주이고 중소기업과 직결된 부분이 많은 만큼, 중소기업 이슈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동 협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

---

11)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인터뷰(2022.9.28.)

## 참고자료

### [국내 문헌]

윤여준 외(2021), 바이든 행정부의 4대 핵심 품목 공급망 검토 결과 및 시사점, 세계경제 포커스 Vol.4 No.4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규엽·황윤중(2021), 디지털 무역장벽의 실태와 시사점: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오늘의 세계경제 vol.21 No.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종우 외(2019), AI와 국제통상: 디지털 통상규범 현황 및 시사점, ETRI Insight 2019-42, ETRI.

전국경제인연합회(2022), 글로벌공급망 전망과 과제 기업인식조사.

정해영(2022), 주요국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 현황 및 시사점, KIAT 통상리포트 Vol.12, 한국무역협회.

지만수(2022), 지정학 시대, 중국경제가 직면한 위기와 변수. 국제금융연구원.

한국지역학회(2022). IPEF 분야별 중소기업 이슈와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 [기사 인용]

아주경제(2022.09.30.), 한-중간 공급망 협력방안 모색.

<https://www.ajunews.com/view/20220930045527145>

매일경제(2020.09.05.), 디지털 쇄국과 개방의 갈림길.

<https://www.mk.co.kr/news/business/10446301>

매일경제(2021.12.28.), 전세계 '클라우드 혁신' 불붙었는데... 한국, 여전히 간간한 규제로 어깃장. <https://blog.naver.com/bevariable/222607062608>

### [인터넷 자료]

외교통상부

<https://fta.go.kr/main>

CPTPP

<https://www.mfat.govt.nz/en/trade/free-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in-force/cptpp/comprehensive-and-progressive-agreement-for-trans-pacific-partnership-text-and-resources/>

DEPA

[http://www.sice.oas.org/trade/DEPA/DEPA\\_index\\_e.asp](http://www.sice.oas.org/trade/DEPA/DEPA_index_e.asp)

USTR

<https://ustr.gov/trade-agreements/agreements-under-negotiation/indo-pacific-economic-framework-prosperity-ipef>



## KOSI 중소기업 포커스

---

발행인 : 오동윤

편집인 : 이동주

발행처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신대방동 686-70) (07074)

전화: 02-707-9800, 팩스: 02-707-9894

홈페이지: <https://www.kosi.re.kr>

인쇄처 : 주식회사 위드원커뮤니케이션

---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연구진)의 견해이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